
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(營漁技術)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항제5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